



Tax News Flash

EU Fiscal State aid 최신 동향과 시사점

November 12, 2014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공격적인 세무전략 (aggressive tax planning)’ 이 유럽연합이 세운 유럽공동체 내부시장의 원칙 중에 하나인 공정경쟁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EU 가입국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 유럽공동체 내부시장에 속한 특정 기업에 정부보조금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State aid)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승인 없이 지원했을 경우, 해당 지원은 불법으로 간주되고 EU 가입국의 불법지원를 받은 기업들은 해당국에 지원받은 금액을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State aid 와 BEPS 을 연관 지어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지역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많은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유럽연합의 움직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한국기업들 역시 이러한 움직임을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State aid 에 대한 최근 움직임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주요내용

1. State aid 대상은?

EU State aid 는 EU 가입국 및 European Economic Area (EEA)의 3 개국(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기업(undertaking)에 적용되는 사항임. ‘기업(undertaking)’이란 파트너십, 회사 및 고정사업장을 모두 포함함.

2. State aid 는 무엇인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의 경우 EFTA
감시위원회)의 승인 없이 EU
가입국은 자체적으로 기업에
대해 State aid 를 지원할 수
없음. 이러한 규정은
유럽독점규제법에
따라 시행되며, EU 와 EEA 내
공정경쟁의 유지 및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FEU)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의 EEA Agreement 임.
EU State aid 는 기업에 직접
지급되는 정부보조금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에만 제공되는
조세감면, 세제혜택 등 기업에
제공되는 모든 혜택을 포함함.

3. State aid 의 형식은?

State aid 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짐; (1) 선택적으로
혜택을 주는 조세제도 (2) 개별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예규(tax
ruling) 및 조세합의안(tax
settlement)의 형태로 주어지는
개별적 세금감면.

4. State aid 는 언제나 불법으로 간주되나?

언제나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EU 가입국이 제공하는 State aid 가 EU 법에 부합하면 합법적인 것으로 봄. 유럽공동체내부시장 원칙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름(결정 이후 항소 가능). 다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또는 EFTA 감시위원회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된 State aid 는 일단은 불법보조금으로 간주함.

5. 만약 State aid 가 EU 규정에 위배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또는 EFTA 감시위원회가 (1) EU 가입국에서 기업 및 단체에 주는 세제혜택이 일반적으로 해당국의 세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크거나; (2) 해당국 세법 자체가 부당하게 선택적인 세제혜택을 주었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릴 경우,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해당국이 기업에 제공했던 세제감면 혜택을 모두 환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환수금액은 세제혜택으로 인한 미납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로, 조사가 시작되었던 시점부터 과거 10년까지 복리이자가 적용됨.

6. 해당국이 EU 또는 EEA 에 가입하기 전에 제공된 State aid 는 어떻게 되나?

해당국이 TFEU 또는 EEA 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혜택을 보고 있는 소위 기존지원(Existing aid)의 경우에는 환수대상이 아님. 다만, 향후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또는 EFTA 감시위원회에서 기존에 지원되던 세제혜택을 폐지하도록 명할 수 있음.

EC 가 최근 State aid 와 BEPS 를 연관 지어 생각하기 시작함에 따라 EU 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들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바 한국 기업들도 이러한 동향을 이해하고 필요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임

7. 재정지원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

State aid 는 일반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액(예: State aid 를 제외하고 계산된 세액)과 실제로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계산함.

8.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State aid 관련 움직임은?

2014 년초,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OECD 와 G20 의 BEPS Action Plan 과 더불어 다국적기업의 공격적인 절세계획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EU 의 자체적인 안건으로 EU State aid 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발표하였음. 구체적으로 특정 예규 및 세제혜택들에 대한 일련의 조사에 착수하였고, 해당 사례들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임.

9. 현재 조사진행 중인 케이스들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현재 이전가격세제 적용 및 이익배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 및 케이스를 조사 중에 있음. 현재 조사중인 2 개의 사례는 정상가격원칙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State aid 관점에서도 궁극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10. State aid 규정은 이전가격적용에 국한되는가?

현재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는 이전가격규정의 적용 여부와 실질과세를 파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나, State aid 는

사실상 선별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여러 정책이나 합의안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가격규정에 국한되지 않음.

11. State aid에 더 많은 조사가 이루어질지?

현재로서는 규정에 위배되는 State aid에 대한 조사가 얼마나 더 진전이 될지는 알 수 없음. 더 진전된다 하더라도 조사방향은 미지수임. 다만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State aid 와 이에 따른 조사를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의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됨.

12. State aid가 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최종 판결하기까지 소요되는 기한은?

EU 가입국이 사전승인 없이 State aid를 지원 하였을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려야 할 의무는 없음. 해당 가입국과의 커뮤니케이션, 이슈의 복잡성 및 이해관계자의 수 등의 요인에 따라 조사시작시점부터 최종판결을 내릴 때까지 기한은 최소 1.5년에서 2년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13. 현재 받고 있는 조세혜택 등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해당 예규, 조세합의안 및 조세체계 등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와 타 EU 가입국에서 유사한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

14. 언제 기업은 State aid 판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특정 기업 또는 국가에만 적용되는 위배사항일지라도, State aid에 대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최종판결은 전 EU 가입국에 적용될 수 있음. 대부분의 경우, 특정산업에 있는 구성원 등 여러 익명의 수혜자를 위한 세제혜택 및 감면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짐. 공식적인 조사에 대한 최종결과가 발표되면 해당 이해관계자는 집행위원회에 서면으로 조사 결과에 대해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조사 결론 중 해당 기업에 “직접적이고 개별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15. 정부와 조세합의안 체결 시, State aid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예규, 조세 합의서 또는 특정 조세제도를 적용하는 등 과세관청과 새로운 Tax position에 대해 논의할 때 State aid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임. 예규, 조세체계 합의서 등을 망라하여 EU 또는 EEA 가입국의 어떠한 조치라도 비정상적으로 관대하거나 호의적이라면 State aid 관점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봐야 함.

Contacts

국제조세 이상도 709-0288 sdlee@samil.com	내국세 주정일 709-0722 jjjoo@samil.com	이전가격 및 국제통상 이희태 3781-9083 htlee@samil.com	금융세무 윤인희 709-0542 ihyun@samil.com
김성영 709-4752 sykim@samil.com	오연관 709-0342 ygo@samil.com	헨리안 3781-2594 henryan@samil.com	박태진 709-8833 tjpark@samil.com
김상운 709-0789 swkim@samil.com	박승선 709-0621 sspark@samil.com	전원엽 3781-2599 wychon@samil.com	정훈 709-3383 hoonjung@samil.com
이동복 709-4768 dongblee@samil.com	황철진 709-0759 hcj@samil.com	조정환 709-8895 jwhancho@samil.com	글로벌 서비스 이중현 709-0598 alexlee@samil.com
신현창 709-7904 hcshin@samil.com	정찬우 709-0692 cwchung@samil.com	해외파견세무 정연성 709-0538 yschung@samil.com	김주덕 709-0707 michaelkim@samil.com
조세/불복 조남복 709-0501 njoo@samil.com	이영신 709-4756 yslee@samil.com	상속증여 및 주식변동 이현종 709-6459 hyunjonglee@samil.com	조창호 3781-3264 changhojo@samil.com
	정민수 709-0638 minsjung@samil.com		서백영 709-0905 byseo@samil.com
	김진호 709-0661 jhokim@samil.com		삼일조세정책연구소 송상근 709-0559 sksong@samil.com
	정복석 709-0914 bsjung@samil.com		

본 자료의 내용은 고객에게 관심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법 및 관계 법령 관련 영향이나 적용은 관련된 특정 사실에 따라 매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삼일회계법인의 상기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2014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